



EC의 원산지 규정 비교 분석(III)

5. 반덤핑 측면의 원산지 규정

차례

1. 서언
2. 원산지 규정의 일반개요
 - 1) 비율기준 검증
 - 2) 세법변경 검증
 - 3) 기술적 검증
3. 비특혜원산지 규정
 - 1) 절차
 - 2) 실체법
4. 특혜원산지 규정
5. 반덤핑 측면의 원산지 규정
6. 기타 원산지 규정
7. 결론

실제로 반덤핑조치 사용의 증가는 원산지 규정 적용방식에 대한 반발과 함께 원산지 규정을 통상정책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최근의 논란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80~'90년대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반덤핑법이 부상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문제에 대한 GATT의 근거는 불명확하나 특정국 원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절차가 통상 개시되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관행은 반덤핑법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수입국의 소관부처가 조사 중이거나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있다.

두번째로, 반덤핑 제소는 동종제품을 생산

하는 수입국 업체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 생산업자와 이들의 수입업자들은 수입국내 현지 산업에 의해 수행된 생산공정이 실제로 원산지를 획득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째로, 많은 우회문제가 원산지 규정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二重 아니면, 三重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반덤핑법을 다루는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반덤핑 관세가 외국 원산제품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수입국의 반덤핑 제소 생산업체들이 실제로 현지 산업으로서의 자격여부를 판정키 위하여 원산지 규정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네번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해외 생산업체와 관련된 수입국내 생산업체들의 반덤핑 관세우회 여부를 판정키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야누스적인 접근방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관한 GATT 합의문 초안에 나타나 있다.

여기의 Article 1 : 2는 同합의문 초안을 반덤핑 절차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지산업 정의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설정해 놓고 있다.

EC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특정국 원산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며 최고관세(Residual Duty)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 부과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 법원은, 반덤핑법 시행과 관련 미 세관이나 재무부의 결정과는 다를 수도 있는 원산지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부의 관점에서 반도체의 원산지는 조립과 테스트의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는 것이고 상무부의 관점에서는 원산지가 확산(Diffusion) 공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은, 수입국이나 제3국의 우회수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완제품의 가격과 반덤핑 규제대상 국가로부터의 부품가격과의 차이가 적은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두고 혹자는 “Headw-we-win”, “Tails-you-lose”라 표현하기도 한다.

국내산업의 정의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은 Brother Case를 포함한 몇몇의 반덤핑 조사에서 미 상무부가 생산자가 아닌 조립업체에 의하여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사실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EC에서 제3국 우회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기초하여 판정된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집행위는 일본업체인 “Brother”의 대만 생산에 대하여 개시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만에서 생산된 타자기가 대만 원산지를 획득치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료시키고 이어 EC 회원국들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EC는 1990년 GATT 패널에서 EC 검증방법이 불법이라는 판정이 나오기 전인 1987~1989 기간동안 수입국 우회에 대해 60 : 40의 부품가격 검증기준을 사용했었다.

거의 동시에 EC 집행위는 복사기를 포함한 많은 Case에서 현지산업의 정의에, 원산지 규정이나 부품테스트 기준보다 현지 부가가치를 중대시킬 의향이나 장기간의 투자 및 고용증대 등 다소 모호한 기준에 의해 EC 내 생산업체들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복사기 Case에서 EC 검증방법의 혼돈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관련 행정절차 과정에서, 主要 EC 제조사인 Rank Xerox社의 현지 부품조달을 부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Rank Xerox社는 현지 부품조달 증대를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EC 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절차 종료후, EC내 일본업체에 대해 현지 부품조달비율(60 : 40%) 조사를 개시해 우회판정을 내렸는데, 이때 일본의 생산

업체인 후지제록스관련社인 Rank Xerox는 조사에서 제외 되었었다.

한편 Mita와 Ricoh社의 홍콩과 캘리포니아내 현지 생산도 조사했으나, 이 경우 EC 집행위(DG XXI)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Mita와 Ricoh의 반덤핑 관세 우회여부를 조사하였다.

Ricoh社의 경우, 당시 현지 조립공정에서 하네스, 드럼, 룰러, 사이드플레이트, 룰러베어링, 스크류 등의 부품도 함께 생산했었는데 집행위는 이들을 현지 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판정으로 미국과 일본은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시 네가티브 원산지 규정을 UR 합의문 초안(Draft Agreement)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홍콩산 소형 칼라텔레비전에 대한 EC의 반덤핑 조사는 원산지 국가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EC 집행위까지도 곤혹스럽게 한 것 같다.

집행위는 조사결과 홍콩산 소형 CTV가 홍콩 원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을 인정하였으나, EC 회원국 세관당국은 홍콩산 CTV 수입시 신고된 내용과 다른 원산지로 판명될 경우 해당국산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단서로 홍콩 생산업체에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홍콩 CTV 수입품이 실제로 한국원산이면 한국에 부과중인 Residual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일본, 말레이지아 또는 EC 원산일 경우 A/D 관세 부과 되지 않을 것임)

호주의 경우, 원산지 문제는 현재까지 반덤핑 규제와 관련하여 큰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1) 시장규모, 위치, 노동조건 등으로 보아 수입국 우회가능성 희박, (2) 덤플 마진계산 실점이 원산지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되며, (3) 공산품에 대하여는 국가 단위가 아닌 업체단위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됨.

상기 (2), (3) 항목으로 보아 호주는 통상 X국의 X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만일 생산업체가 X가 Y국내에 합작투자 공장 X/Y社를 세워 수출을 시작한다면, 호주는 Y국의 X/Y사로부터 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제소를 要求하게 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카나다 당국은 아마도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Case의 대부분에서 Globalization 문제에 직면해 오고 있다.

Mr. Gottlieb는 당면 원산지 관련 문제와 카나다 당국이 내놓은 해결방안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지 산업의 정의에 관하여, 단순한 조립만으로도 국내산업(혹은 그 일부)으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다는 판정을 계속 내림으로써 융통성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나다에서 수입국 우회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아마도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하여도 폭넓게 제소하는 카나다 업체의 일반적인 관행 때문일 것이다.

제3국 우회와 관련하여, DNR Case의 경우 제3국(미국)에서의 부가가치의 충분치 못했던 바 일본원산으로 간주하여 일본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계산한 예가 있다.

6. 기타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표식(Marking), 라벨 부착(Labelling), 혼위광고법, 관세환급규정, 정부조달, 공정특허(Process Patent),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Proceedings), 물량제한, 수입금지(Prohibited Imports), 교역금지(Trade Embargo),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원산지 문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문제를 발생

시켜 왔는데 EC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Nissan “Bluebird” 분쟁전을 들 수 있겠다.

Nissan 분쟁에 있어서의 프랑스의 입장과 반덤핑 규정 13조(10)에 대한 EC 집행위의 그릇된 해석으로, EC 역내 생산품을 여타 EC 지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 우회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한도의 Local Content (현지 부품의무 조달율)가 필요하다는 오해를 발생시켰다.

프랑스의 입장은 EC 법에 전적으로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첫째로 일본자동차에 대한 프랑스의 쿼터는 불법이며, 두번째로 일단 EC역내에서 제품이 자유유통되면(닛산의 영국현지 공장 생산의 경우) EC 원산지 규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Mr. Komuro는 원산지 표시법에 대한 일본 공정무역위원회(FTC)의 적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日本과 미국의 공정무역 위원회의 원산지 표시 조항이 원산지 규정에 관한 GATT 합의문 초안에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이러한 원산지표시 의무조항이 GATT Article IX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7. 결론(GATT 합의문초안 : Draft Agreement)

몇년전까지만해도 원산지 규정은 법적인 절차가 거의 부재했던 모호한 분야였으며, 정부 관리들도 정책수립과 시행에 대해 묵인해 왔었다.

한편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의는 개별기업(특히 해외기업) 차원에서 다를 수 없는 정부 관할사항으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원산지규정은 기술적인 문제에 기초하여 기술자들이 적용하는 기술규정으로만 폭넓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GATT 정책 입안자들이, 원산지규정 조항 포함을 그리 중요치 않게 여겼으며, 또한 최혜국규정 적용을 목적으로한 제품의 실질적인 원산지 결정권을 각 수입회원국에게 위임해 온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1947~1989년 동안에 일반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수차례의 협의를 가졌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여러가지 이유, 특히 최근 美, EC의 원산지 규정 입안과 해석이 정치적으로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이것이 무역제한 또는 왜곡의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전반적인 인식으로, 우르파이라운드에서 여러 회원국들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곧이어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었다.

